조 례 안 예 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71호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5,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windhwan80@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이정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7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의 원 : 이정희・감규상・강길순・김우진・김원일
남재욱・남호준・문순규・박영주・박찬열
서명일・심임숙・전태완・차중현
하경석 의원(15명)

1. 제안이유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관계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